(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①학교법인명	신일학원		②이사장 성명	이 상 균			
1 청그비시	③소재지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미아동)				
1. 학교법인	④전화번호	02-944-5992		⑤FAX	02) 944-5999			
	⑥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⑦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⑧총장 성명				
2.설치·경영	⑨소재지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대학교	①전화번호	02-944-5290		①FAX	02) 980-2222			
	12입학정원	3,270 명 ^③ 기타 ·경영		동 법인 설치 학교명	신일 중.고등학교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인의 감사결과						
구 분	외그	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	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A)감사의견	ㅇ 외부감사인의	l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 : 조	[†] 정				
⑤한정사항	o 외부감사인의	l 감사보고서상 한정	사항 : 히	H당사항없음				
16특기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해당사항없음.							
⑪기타⑮⑯이외 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 위반 해당 금	^수 액과 내용 : 해당사 [‡]	항없음.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04월 27일

다산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기 화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 상 균 귀하

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06188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8길 23(대치동,일동빌딩) Tel 02-531-7400

http://www.dasancpa.com e-mail:dasan@dasancpa.com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서울사이 버대학교 교비회계의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호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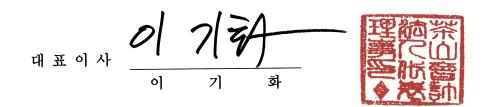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계속;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수익사업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중요성의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4월 27일) 현재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 및 그 설치학교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6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학교명 서	울사이버대학교			
		위반여부						
	확인 사항		하는 회계		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증여·교환·용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를 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2. 교비회계 <i>=</i> 나 대여하였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 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 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 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부	부	부	부	해당없음			
5. 이월금 구· 정한지 여부	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	부	부	부	해당없음			
령에 따라 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 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 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 부	부	부	부	해당없음			
7. 기타 외부 는 중요 사항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부	부	부	해당없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16	학교법인명	신일학	원	학교명	서울	사이버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니	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증여·교환·용도 이나 권리포기	보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0	
2. 교비회계 =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 지 여부	부		사립학교	고법 제29조		0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 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부		사학기관 제44조	반 재무·회계	규칙	0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 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부	부			반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		0
5. 이월금 구 정한지 여부	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	부		제22조	ጕ 재무·회계 및 동 규칙Φ 지21조		
령에 따라 교육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 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 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 부	부		사립학교	고법 시행령 저	레13조	0
7. 기타 외부 는 중요사항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1이 시기에 가한 것 드이거이	, ,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해당사항없음

2. 교비회계: 해당사항없음

3. 수익사업회계: 해당사항없음

4. 부속병원회계: 해당없음

5. 기타 중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별지 제4호 서식)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결과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2016 보고사항 집계표			대	학교명	서울사이브	버대학교	
			위	반 금 앤	(단위	H : 천원)	
확인항목	법인	회계		학교	고회계	중). 기	
	일반업무	수익	사업	교비	부속병원	합계	
합 계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여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별지 제4의1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_	해당없음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별지 제4의1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	해당없음		
③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_	해당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 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액지원	해당	·없음	-	해당없음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출완료 (붙임)	해당	·없음	I	해당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출완료 (붙임)	전출 (붙	·완료 ·임)	_	해당없음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	해당없음		
8 자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	해당없음		
9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I	해당없음		
①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별지 제4의3호 서식]	적정	적	정	_	적정		
①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 어졌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적정	적	정	-	적정		
① 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여부(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33조) [별지 제4의4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	해당없음		
③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별지 제4의5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	·없음	_	해당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회계연도	2016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	기버대학교
감시	·항목		위반금액 (천원)			
재산을 교환・용 제공 또는 권리의 포 사항 여부	허가없이 기본 메도·증여· 도변경·담보 : 의무부담이나 기에 관한 감사 ! 법제28조제1항)		해당없음			
() 건		계			
등록 기I 필요한 2 였는지 0	등 시 등기・ 타 권리확보에 설차를 이행하 너부 ··회계규칙제44조)		해당없음			
() 건		계			

(별지 제4-2호 서식)

회계연도	2016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				울사·	미버대학교			
감사학	항목		위반금액 (천원)							
	법인 임원 목적 사용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법인의				산출기준액	(단위:	천원)		
		구 분	사학연금 부담금	재해5 부담	보상 금	퇴직수당	계			
④ 학교법인여	이 부담해야	신일중	96,502		6,712	0	10	3,214		
하는 사학	학연금 법인	신일고	197,027	2	4,336	0	22	1,363		
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서울사이버대	339,749	2	1,449	0	36	1,198		
교육부장된	관의 승인	합 계(A)	633,278	5	2,497	0	68	5,775		
없이 또는	- 승인액을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단위:	천원)		
초과하여 3 부담 여부	교비회계에서	구 분	연금부담금	재해5 부담	보상 금	건강보험료	계			
	연금법 제47조	신일중	96,502		6,712	0	10	3,214		
동법 시행령 69		신일고	197,027	2	4,336	0	22	1,363		
од 100 ж	, 10/	서울사이버대	339,749	2	1,449	0	36	1,198		
		합 계(B)	633,278	5	2,497	0		5,775		
		(A-B)	0		O	0		0		
발생한 이 당해 학교 여부	의 법인세 교자금 예치로 자 소득세)을 교에 미전출 I조 제6항, 법인	총 110,19 중 32,4 5,968,380 • 7월 29일 총 11,006 신일중 3, 원) • 8월 11일 총 8,370,1	5,968,380원) • 7월 29일 지방소득세 환급금 수령 총 11,006,820원(법인 10,257,710원, 연수원 40,460원, 신일중 3,220원, 신일고 121,27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584,160							
		• 수익용기본	!재산의 확보 	및 수익	금의 학	교 전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액	확보액	수입	액 수입액 80%	1 415	章액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및 수익금의 학교 출 여부 등	·의 학교 전 등	신일중 신일고 소계 서울 사이버대	2,535,499	,000,000 ,000,000 ,748,570	365,			5,685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합계	23,713,940 27	,748,570	365,	.685 292,5	36	5,685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횡령 여부 : 해당없음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 여부 : 최대수익 목표로 운용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시가기준 임대운용 하고 있음. 수익사업회계의 타 회계와 구분 여부 : 구분경리								

(별지 제4-3호 서식)

회계연도	201	6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	기버대학교
감사항목				위반금액 (천원)			
⑦ 학교법인의 인 운영비 등을 회계에서 사용(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 -여부]건비·일반 경상운영 지급한 내용 : 해당		취득비 포함)	
또는 개인 용 사용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교비회계 : 체다어으						
9 교비회계 수다른회계에 하거나 대여 (사립학교법제29조제 · 또는 부속병임상교원인건법인으로 전출(의료기관 재무제표작성 방법)	전출 여부 (6항) 원의 비를 여부	亚 b : 「人 年 至					
(1) 이월금 구분(시 명시·기타이 적정한지 여 (사립학교법 제32조	[고· 월)이 부 이의	 법인일반업무회계: 1,472,147천원 설치학교 지원금: 1,266,310천원 법인 운영 자금: 205,837,128천원 교비회계: 이월금 구분이 적절함 					
① 시설 공사 및 계약이 「국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 에 따라 적 이루어졌는지 (사학기관재무·회기 제35조)	가를 하는 · l률」 · 절히 · 여부 ·	법인]수익사업회계	: 적절하게 이루어? : 적절하게 이루어? !하게 이루어짐			

(별지 제4-4호 서식)

회계연도	(12)시	-기업	이 발행한 기	업어음	·(CP) 매입	학교법역	인명	신일	학원		
2016	(,	사학기관	기 발행한 기 명세서 재무·회계규칙제4	조, 제7조	및 제33조)	대학교	1명 /	서울사이	버대학교		
구 분	중개 회사명	(기간:	구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매입 회수	총매입액 (천원)	부도/	부도/대손처				비고
, &	회사명	(7 F.E.	년 월 일까지)	회수	(전원)	매수	금액	(천원)			
법인일반 업무회계 수익사업 회계			해당없음								
			계								
교비 회계 부속병원 회계			해당없음								
			계								
		합계									

(별지 제4-5호 서식)

회계연도	③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2016	감사사항	대학교명	서울	사이버대학교		
요청한 세부사항	감사인의 보고 내용		반금액 번원)	비고		
	해당없음					
()건	계					